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964,252,320	28,927,570
일반회계		877,169,646	26,315,089
특별회계		87,082,674	2,612,480
	기타특별회계	87,082,674	2,612,480
	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78,144,851	2,344,346
	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747,361	22,421
	공원관리특별회계	4,295,894	128,877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,894,568	116,837

제 2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인건비, 직무수행경비,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- 지방채,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-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
-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구,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재,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

제 8 조 최종추경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.